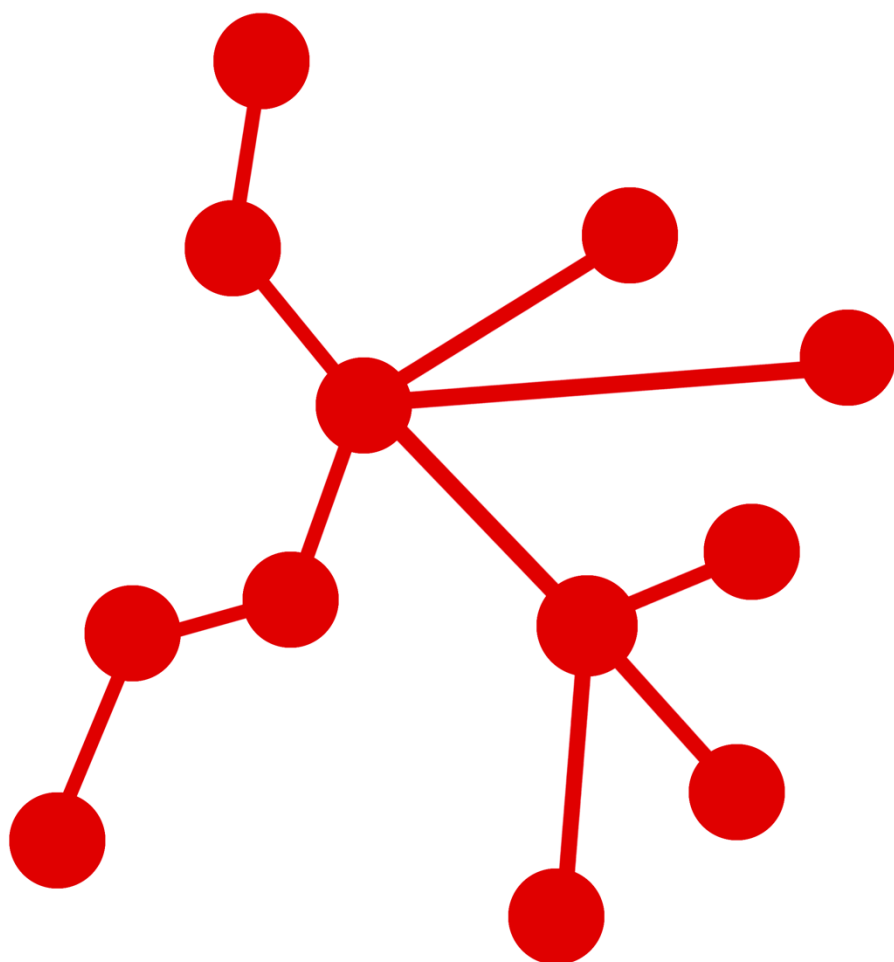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선거시행세칙

[신설 2022.06.27.]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라 한다)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의 원칙) ① 선거는 대의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대표자의 책임) ① 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적용범위) ① 본 세칙은 전한련의 의장,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② 본 회 각 기구의 선거는 자치규칙에 따른다. 단, 해당 규칙은 본 세칙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선거사무

제 1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5 조(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제 6 조(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선거에 대한 홍보
3.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건전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선거 관련 취재와 보도에 관한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7.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8. 선거공영기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9.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외 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 7 조(의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세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회칙 제 176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관리·감독한다.

제 9 조(위원)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 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을 한 명씩 파견한다.

1. 회장 또는 부회장
2. 의장 또는 부의장
3. 각 집행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임명된다.

제 10 조(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 11 조(위원의 사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제 10 조제 2 항, 제 10 조제 3 항, 제 10 조제 4 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은 재적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위원의 해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때
4.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하였을 때
5. 본 회의 회원이 아니게 되었을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절차는 회칙 제 89 조를 준용한다

제 12 조(소집요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소집요구를 통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청
2. 중앙선거관리위원 1/3 이상의 연서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

②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개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 14 조(출석요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회일 3 일 전까지 출석요구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석요구일
2. 출석요구 시간
3. 출석요구 이유

③ 출석요구 대상자가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석사유서를 학생총회 개회일 1 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석요구 대상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전한대회는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결석사유서 또는 답변서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⑥ 출석요구서, 결석사유서와 답변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의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석인원의 1/2 초과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찬성이 반대와 동률일 경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의결은 기명으로 진행한다.

제 16 조(롤미팅) ① 후보자 등록 및 서류의 시정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롤미팅을 개최한다.

②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제시되지 않은 선거운동 및 선거시행에 대하여서는 롤미팅에서 정한다.

③ 롤미팅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참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인원 1/2 이상의 참석,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④ 롤미팅에서 각 후보자간에 협의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각 후보자들이 열람한 후 서명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에 명시된 합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위반하였을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계조치의 근거가 된다.

⑥ 롤미팅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각 선거운동본부장 1 인과 출석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의결을 진행하여 2/3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에 한하여 예외조항을 작성할 수 있다.

제 17 조(기초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기초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기초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집행국장
2. 선거운동본부원

③ 집행기구와 기초단위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선거관리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본부

제 18 조(지위)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본 회의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본 회의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제 19 조(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④ 본 회의 회원은 선거기간 중 두 곳 이상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이외의 참모진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삭제>

제 21 조(후보자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퇴기간 내에 그 직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1. 부의장

2. 대의원

3. 부회장

4. 집행국장

5. 집행국원

6. 감사위원

7. 회칙해석위원

8. 선거기간이 겹치는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 사무에 관련된 직위

9. 선거기간이 겹치는 기초단위기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련된 직위

10. 학생언론 및 학생자치 언론에 관련된 직위

② 제 1 항에 따른 사람이 직위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서식의 사퇴서를 작성하여 사퇴한다.

제 22 조(입후보자 등록) ① 선거 의장 또는 회장으로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곳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기간 마감 이후의 등록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등록원 1 통

2. 후보자 재학 증명서 1 통

3. 추천인 서명서

4. 명함판 실물 사진(세로 5cm x 가로 7cm) 1 매와 가로세로 1000 픽셀 이상의 jpg 또는 jpeg 파일

5. 5 개 이내의 선거공약 및 이력서

② 제 1 항에 따른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③ 입후보자의 기호는 1 차 룰미팅 때 정하도록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투표용지 제작 등은 제 3 항에 정해진 기호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나열하여 표기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후보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기호 1, 기호 2, 기호 3 기권]의 순서로 한다.

2.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1. 찬성, 2. 반대, 3. 기권]의 순서로 한다.

제 23 조(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명단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마감시간 이후 당일 각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명단을 다음날 낮 12 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보자의 이름, 학교와 학번
2. 선거운동본부명과 선거운동본부 모토,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학교와 학번
3. 핵심 선거 공약 5 개 (단, 공약의 길이는 공약별로 띄어쓰기 미포함 50 자로 제한하며, 단순 공약의 나열은 하나의 공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입후보 등록원에 제출한 사진
5. 최근 전한련 회비 납부 내역
6. 띄어쓰기 미포함 500 자 이내의 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포부

③ 입후보 등록 서류 심사는 입후보 등록 마감 이후 2 시간까지로 하며, 심사가 마감되면 등록한 모든 선본에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을 일괄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은 등록 마감 후 3 시간까지로 한다. 단,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벌점 1 점을 준다.

제 24 조(사퇴) ① 선거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문서로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사퇴한 후보자는 타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③ 사퇴서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제 25 조(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본을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 후보자가 임명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본장의 교체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 따른 교체신청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⑤ 제 3 항에 따른 교체 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한다. 심의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선본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본부장이 되려는 사람은 사퇴기간 내에 그 직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사퇴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등록일 이전에 공고한 기간으로 한다.

1. 부의장
2. 대의원
3. 부회장
4. 집행국장
5. 집행국원
6. 감사위원
7. 회칙해석위원

8. 선거기간이 겹치는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 사무에 관련된 직위
9. 선거기간이 겹치는 기초단위기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련된 직위
10. 학생언론 및 학생자치 언론에 관련된 직위

② 제 1 항에 따른 사람이 직위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서식의 사퇴서를 작성하여 사퇴한다.

제 26 조(선거운동본부 모집 공고)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는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자의 이름, 학교와 학번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학교와 학번
4. 담당자 1 명의 연락처
5. 띄어쓰기 미포함 1000 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② 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 1 항의 공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고문을 심의한다.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 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벌점 2 점을 부과한다.

제 27 조(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제 22 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과 함께 신청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다. 변동사항은 매일 21 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메일에 문서로 제출하며, 보고한 변동사항은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사람 1 명 당 3 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벌점 1 점을 부과한다. 단, 둘 이상의 선거운동본부에 중복 등록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⑤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8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박탈한다.

1. 부의장
2. 대의원
3. 부회장
4. 집행국장

5. 집행국원

6. 감사위원

7. 회칙해석위원

8. 선거기간이 겹치는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 사무에 관련된 직위

9. 선거기간이 겹치는 기초단위기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련된 직위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벌점 1 점을 부과한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업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실무위원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 28 조(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본 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본 세칙 및 본 세칙에 부수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롤미팅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운동

제 28 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본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기초단위기구·독립기구·특별기구의 통상적인 활동

3. 학생들로 구성된 본 회의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4. 학생 개인 신분의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게시물 단순 공유

②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개인에 서면 경고를 하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개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개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과문 게재 요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동참시킬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벌점 2 점을 부과한다.

제 29 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0 조(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전경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후보자 추천 행위

3. 설문조사

4. 후보자 및 선본원 모집 행위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 1 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3 점 이하의 별점을 부과한다.

제 31 조(선거운동 자격) ① 선거운동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부의장

2. 대의원

3. 부회장

4. 집행국장

5. 집행국원

6. 감사위원

7. 회칙해석위원

8. 선거기간이 겹치는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 사무에 관련된 직위

9. 선거기간이 겹치는 기초단위기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련된 직위

② 제 28 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은 제 28 조 제 1 항 4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퇴기간 내에 사퇴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운동본부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명찰의 크기는 세로 10cm x 가로 12cm 로 한정한다.

제

제 31 조(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유세

2. 정책 PT

3. 공청회 참가

4. 언론단체 주최 토론회 및 인터뷰 참가

5. 온라인 정책 Q&A

6.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7.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8. 후보자의 길거리 연설

② 선거 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운동본부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32 조(강의실 유세) ① 강의실 유세는 수업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 내에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정견 발표와 홍보물 배포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강의실 유세는 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10 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온라인 강의 유세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한다.

③ 강의실 유세를 할 때 강의실 내부에는 선거운동본부원 최대 3 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④ 강의실 유세를 할 때 빔 프로젝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강의실 유세 행위가 시작된 이후 기기조작 등에 사용되는 시간도 10 분 범위에 포함된다.

⑤ 강의실 내에서 단순히 홍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강의실 유세로 보지 아니한다.

⑥ 강의실 유세에 대한 판단은 공간과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⑦ 강의실 유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2 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한다.

제 33 조(정책 PT) ① 정책 PT 는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정책 PT 과정에서 진행되는 강의실에서의 정견 발표와 홍보물 배포 등의 행위는 강의실 유세나 홍보물 배포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정책 PT 는 선거운동본부가 정책 PT 강의를 섭외하고,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룸미팅에서 이를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단, 룸미팅 이후 선거운동본부에서 섭외한 정책 PT 강의의 경우, 정책 PT 전날 18 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책 PT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진행을 방해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2 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한다.

제 34 조(공청회 참가) ① 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공청회 시작 시각 10 분 전까지 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가 공청회장에 10 분 전까지 도착하지 아니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2 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한다.

③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④ 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한다.

⑥ 공청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35 조(온라인 정책 Q&A) ① 온라인 정책 Q&A 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영상을 통하여 정책을 소개하고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유권자들의 질의에 각 선거운동본부가 응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온라인 정책 Q&A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일에 전한련 SNS 에 선거운동본부별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한다.

③ 해당 영상에 대한 유권자의 질의는 SNS 상에 본인의 학번, 성함 및 재학여부를 기입하여 댓글로 달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본인의 신분을 밝힌 유권자들의 질의들에 대하여 답할 의무가 있다.

④ 유권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댓글이 달린 후 선거운동본부에서 24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정책 Q&A 게시 영상은 선거운동 영상선전물 개수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본부별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단순 비방 및 인신공격성 질의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⑦ 유권자가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 질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삭제한다.

⑧ 영상 게시 일시는 1 차 롤미팅에서 정한다.

제 36 조(선전물의 사전 허가)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용 및 개수의 사전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형태의 파일을 통하여 사전에 내용을 심의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사전 심의를 통하여 허가한 경우 전자형태의 파일과 실물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실물이 없는 선전물의 경우 종류와 규격에 대한 심의만 거친다.

④ 심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영상이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영상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규격의 경우 미터법으로 5%의 오차 범위는 허용한다.

⑤ 게시물·유인물·영상이 허가되지 아니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수정된 게시물·유인물·영상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사전 허가 없이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5 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한다.

⑦ 이미 인쇄되거나 제작된 선전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10 점 이하의 벌점을 주고 게시 및 배포를 허용할 수 있다.

제 37 조(유인물) ① 선전물 중 유인물은 팜플렛, 리플렛, 명함으로만 제작한다.

② 팜플렛은 소책자 형식의 유인물을 말한다. 팜플렛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대 1 종

2. 펼쳤을 때 넓이가 A3 규격 1 장 이내

3. 최대 면수 16 면

③ 리플렛은 낱장으로 된 유인물을 말한다. 리플렛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대 6 종

2. 펼쳤을 때 넓이가 A3 규격 이내

3. 모든 종류의 리플렛 넓이의 합이 A3 규격 3 장 이내

④ 명함은 성명, 정보 등을 적은 작은 유인물을 말한다. 명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대 1 종

2. 펼쳤을 때 세로 5cm x 가로 9cm 이내

3. 통상의 종이, PET, 비닐 등의 재질을 사용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재질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유인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착할 수 없으며, 배부는 한의과대학 내부로 한정한다. 유인물의 부착이 확인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인물의 선거운동본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 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한다.

⑥ 유인물의 경우 SNS,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온라인 상의 공간을 통한 배포가 가능하다.

제 38 조(현수막)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현수막을 달 수 있다.

- ② 동시에 달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별 1 개로 제한한다. 단,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캠퍼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캠퍼스별 1 개로 같음할 수 있다.
- ③ 훼손으로 인한 같은 내용의 현수막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진행할 수 있다.
- ④ 순서 및 장소를 변경하면서 현수막을 달 수 있다. 이때 다시 달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지 아니하다.
- ⑤ 현수막의 규격은 세로 1m x 가로 7cm 이내로 한다.
- ⑥ 현수막 색도의 제한은 하지 않는다.
- ⑦ 현수막을 다는 장소는 1 차 롤미팅에서 정한다.

제 39 조(입간판)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입간판의 개수는 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별 1 개로 제한한다. 단,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캠퍼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캠퍼스별 1 개로 같음할 수 있다.
- ③ 훼손으로 인한 같은 내용의 입간판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진행할 수 있다.
- ④ 순서 및 장소를 변경하면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다시 달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지 아니하다.
- ⑤ 입간판의 규격은 세로 2m x 가로 1m 이내로 한다.
- ⑥ 입간판 게시 장소는 1 차 롤미팅에서 협의한다.

제 40 조(피켓)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피켓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피켓의 규격은 세로 1m x 가로 1m 이내로 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별 5 개로 제한한다. 단,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캠퍼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캠퍼스별 5 개로 같음할 수 있다.

제 41 조(영상)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기간 동안 제작한 영상을 온라인상의 공간에 게시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 소개영상과 선거운동본부 정책 설명 영상을 포함한 총 6 개의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따른 영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 1. 5 분 이내의 후보자 소개 영상
- 2. 10 분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정책 설명 영상
- 3. 10 분 이내의 기타 소개 영상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영상의 홍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한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를 홍보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운동본부별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은 각 4 개로 제한한다.

⑤ 제 4 항에 따른 영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따른다.

- 1. 5 분 이내의 후보자 소개 영상 1 개
- 2. 10 분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정책 설명 영상 1 개
- 3. 10 분 이내의 기타 소개 영상 2 개

제 42 조(온라인상의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SNS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공간 이외의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을 1차 룰미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온라인 계정을 신고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온라인 플랫폼과 계정을 공고한다.
- ⑤ 제 2항을 위반하거나 제 3항에 따라 신고한 계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온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2점 이하의 별점을 부과한다.
- ⑥ 온라인상의 공간에 게시하는 모든 선거운동 내용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게시 24시간 전 상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심의를 받은 유인물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공간에 제 5항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다른 조항의 제한은 적용 받는다.

제 43 조(선거운동본부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의 신상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지정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2점 이하의 별점을 부과한다.

제 44 조(기타 선거운동) ① 개인간 핸드폰 문자메시지, SNS 문자, 전화통화는 허용한다. 자동통보통신 이용은 금한다.

- ② 악기 사용에 대하여서는 1차 룰미팅에서 정한다.
- ③ 차량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단순한 이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징계

제 45 조(징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시행세칙의 위반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징계를 통하여 시정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

② 선거에 관한 사항 중 본 회칙과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구두 경고(주의)
2. 서면 경고
3. 공개 경고
4. 사과문 게재 명령
5. 선거운동의 제한
6. 공영제 삭감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누적 벌점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의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5 점 이상: 비공개 서면 경고문
2. 10 점 이상: 벌점 공개
3. 15 점 이상: 공개 경고문
4. 20 점 이상: 공개 사과문 게재 명정
5. 30 점 이상: 다음날 24 시간 유세 중지
6. 50 점 이상: 선본 자격 박탈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④ 10 점 이상 벌점이 누적된 선거운동본부의 벌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온라인·오프라인상의 공간에 매일 21 시 이전 갱신하여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벌점 부과 날짜
2. 벌점 부과 사유
3. 부과된 벌점
4. 누적 벌점

⑤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은 개인의 신분으로 징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일정 및 공고

제 46 조(선거 일정) ① 의장과 회장 선거는 전한대회 선거에서 시행한다. 세부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의장과 회장 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등록 기간을 3 일, 선거운동기간을 9 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선거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그 외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7 조(선거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0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 46 조 제 2 항에 따른 선거일정
2. 제 22 조와 제 27 조에 따른 등록 구비 서류
3.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제 48 조(입후보자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의장 또는 회장 후보자의 이름, 학교와 학번
2.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와 선거운동본부명
3. 의장 또는 회장 후보자의 등록 학기 및 이력
4.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학교와 학번
5. 포스터용 사진

② 제 1 항 2 호에 따른 핵심 선거공약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형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투표기간) ① 투표는 전한대회 선거일에 시행한다.

② 전한대회 선거일 내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6 장 투표·개표

제 50 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의장 및 회장 후보자의 이름, 학교, 학번과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 순서는 후보자의 성명 순으로 한다.

③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1 명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기권을 두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위원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⑤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選舉印)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두 칸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지을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칸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제 51 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다.

제 52 조(투표절차)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투표관리위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별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 53 조(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 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또는 그밖에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위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도니다.

제 54 조(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제 55 조(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 명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 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 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 56 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참관인 1 명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⑥ 투표관리위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 56 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투표 진행이 중지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대신하여 철회할 수 없다.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 57 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 방해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의 선거운동 행위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사전에 결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본 회칙 또는 본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위원이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원을 투표참관인으로 파견할 수 없다.

제 58 조(질서 유지) 투표관리위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람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단, 선거인의 경우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없다.

제 59 조(투표마감) 투표 종료시각에 투표 마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60 조(투표성립요건) 투표는 대의원 1/2 이상의 투표로 성립한다.

제 61 조(개표)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② 개표는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시될 수 있다.

제 62 조(개표 시각과 장소) ① 개표 시각은 투표 마감 직후로 한다.

② 개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개표 시각과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단, 본 세칙에서 언급한 기준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 63 조(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 장소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 64 조(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총 투표자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별 득표수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 2 호부터 제 5 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최종결과 발표

제 65 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5.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요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 66 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67 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 장소 출석 의무)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의장 또는 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 분 전에 개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제 68 조(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두 명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 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

제 69 조(개표 장소에서의 질서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람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 70 조(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당선 공고 후 48 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당선

제 71 조(당선 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 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1/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장 또는 회장 당선자의 이름, 학교와 학번
2.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 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다)

제 8 장 재투표 및 재선거

제 72 조(재선거) ① 오차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선일 경우 유효투표 중 2/3 가 넘는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당선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혹은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3 조(재투표) 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재투표여부를 결정하며, 재투표의 결정은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재투표가 결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투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며, 본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본 투표 종료 이후에 재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추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74 조(선거 연장 및 연기) 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하여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2~3 일 연기할 수 있다.

② 1 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때에는 1 일에 한하여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차 연장에도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때에는 2 일에 한하여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차 연장 이후에도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75 조 (선거운동자금 제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운동자금의 총액에 제한을 둔다.

② 선거운동자금의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1 차 룰미팅에서 정한다.

③ 1 차 룰미팅에서 정한 선거운동자금의 제한을 넘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 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한다.

④ 그 외에 선거운동자금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6 조 (선거 기록물 관리) ①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7 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② 그 외에 선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다.

제 6 장 선거시행규칙

제 89 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90 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룰미팅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중앙선거관리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앙선거관리위원 1/2 이상의 찬성

부칙 [본조신설 2022.06.27.]

1. 본 세칙은 2023 년 제 1 차 전한대회일부터 효력을 지닌다.